

제33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8일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제33차 이사회 및 제10차 정기총회를 협회 강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재적이사 19명중 15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143명(서면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심의가 있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안심의에 앞서 협회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상정인더스트리 송인권 대표이사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제1호 안전인 1993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방사성동위원소등 수출입 신고업무, 방사선관련 교육훈련, RI폐기물 수거·운반, 방사선 작업 종사자 피폭등록관리업무 추진사항, 학술계몽활동등 '93년도 주요사업과 결산 보고가 있었다.

제2호 안전인 정관개정(안)은 과학기술처의 업무부장 변경에 따라 협회 당면직이사를 원자력정책관에서 안정심사관으로 변경되었다.

피폭관리업무 시행 안내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가 과학기술처 공고 제 1994-12호(94.2.17)에 의거 피폭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가 일부변경 되었으므로 착오없이 시킬 바라며 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업무 개시일 : 1994년 3월 2일

2. 보고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나. 건강진단결과 :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105조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은자중 종사자로서 종사하지 않을경우 당 협회에 기록을 인도하여야 한다.

3. 보고 방법(원자력법 시행령 제117조의 7)

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판독절차에 의하여 판독,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등을 판독할 수 없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피폭선량등을 판독할 수 있는 다른 원자력관계 사업자에게 판독을 의뢰하여 판독 결과 보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피폭선량 보고 대행 신청

가. 다른 판독기관에 판독 및 보고를 대행하게 할 경우는 반드시 당 협회에 “피폭선량 보고대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않을 경우 피폭관리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람.

나. 판독기관 및 보고대행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변경사항에 대해 “피폭선량 보고 대행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5.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등록 신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는 당 협회에 “종사자피폭관리 등록신청”을 한후 피폭관리비용을 납부 함으로서 피폭관리가 시행 된다.

나. 종사자의 등록신청은 매년 2월말 까지 하며, 이후의 신규 등록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추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6. 피폭관리 비용

가.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납부하며, 신규종사자 발생시 추가 등록신청 후 증가분에 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나. 비용 : 1인당 년 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납부방법 : 당협회는 종사자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인원수에 대하여 작성된 납부고지서(은행 지로용)를 해당 기관에 발급 한다.

林 瑢 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 대덕연구단지 기관協 회장 피선 -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林瑢圭원장
(RI협회 명예회장)
은 지난 3월 4일
대덕연구단지내 40
개 연구, 교육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연구단지 기관장협
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이 협의회는 대덕연구단지내의 연구, 교육
기관 및 관련기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통
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
었다.

고 시 개 정 문

- 과학기술처 고시 제 1994-7호(94.1.14)
방사선량에 관한 규정
제 9 조(방사성동위원소)

① 현행과 같음

②

1.

2.

3.

- <신설> 4. 아메리슘(²⁴¹Am)을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9.25메가벨크렐(250마이크로큐
리)

원고모집

本協會에서는 매 분기 발간하는 會報誌에 게재할 기술정보, 국내외
소식, 수필, 학술활동 論壇 및 時論을 모집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 수시

○ 보낼곳 : 사단법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진흥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12(과학회관 5층)
우편번호 : 135-280
전화번호 : 566-1092~3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